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등 〉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71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등	3
2.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8
 [참고자료 1] 청소년지도자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12
[참고자료 2]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13
[참고자료 3]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근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5. 9. 30.
3. 회 부 일 : 2025. 10.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일정수준의 지원과 처우개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이를 포괄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고용안정성, 급여 수준, 복지 제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종사자 복지 차원을 넘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임.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이들의 역량이 더욱 발휘되고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청소년들이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보수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수 수준, 지급실태 및 지자체별 준수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시·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둬으로써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3조제3항 삭제,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등

개정안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처우개선, 인권·복지 증진 및 지위향상 노력 의무,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국가의 지침마련 및 지방자치단체의 준수노력 의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3년마다 보수수준·지급실태·준수율 조사·공표 의무, 공익신고자 보호(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삭제 및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24조의3(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또는 학교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는 현행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¹⁾에 따라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²⁾을 마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 배치되어 있으며,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있음.

그런데, 주요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월 평균급여는 2,364천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³⁾ 2,822천원 대비 83.8%(2025년 기준)⁴⁾ 수준으로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시설별·지자체별 예산구조에 따라 보수의 편차·고용 안정성의 격차가 크다고 함.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⁵⁾과 같이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청소년지도사(1~3급) 자격연수는 30시간, 청소년상담사(1~3급) 자격연수는 100시간임.

3) 생활지도사 10호봉 수준, 2025년 기준

4) [참고자료 3]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참조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처우개선 등의 대상을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청소년 보호·재
활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도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우개선
등의 대상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6)의 청소년지도자 전체로 확
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도 사회복지사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 처우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
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
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

개선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외에도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처우개선 대상을 청소년지도자(지도사·상담사 및 시설 종사자 포함) 전체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 수용하는 입장임. 또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시행령 마련과 처우개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등 공포 후 시행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개정안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시·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시·도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4조의4(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위원회) 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각각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도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u>,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 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 ⑤ (생략)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u>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u> 2. <u>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u> ③ <u>여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u>시·도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u>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u>시·도</u>-----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⁷⁾과 같이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와 시·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근거 신설을 통해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청소년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 및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용하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청소년정책위원회⁸⁾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하므로 기존 위원회를 활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8)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용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45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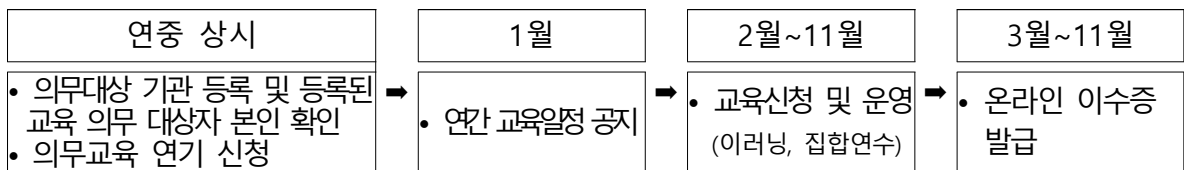
【참고자료 1】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 자격연수

- (목적)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 및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 동아리, 봉사, 예술활동 등을 지도하는 전문 인력 양성
- (자격연수 대상) '93년 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필기, 면접, 면제대상)에 최종 합격하고 자격연수를 받지 않은 자
 - (운영기간) 2025. 1. 9. ~ 8. 21.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 운영 가능)
 - (운영형태) 혼합형 과정(온라인·집체교육 병행)36시간 중, 30시간 이수
 - * (1급) 온라인 13h + 집체교육 23h(3박4일) / (2·3급) 온라인 21h + 집체교육 15h(2박3일)
 - * (교육비) 1인당 81,000원(숙식비 별도, 숙식비는 '25년 국립청소년수련원 시설 이용 요금 기준 적용)
 - (운영장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 휴넷(청소년지도인력 온라인연수원)
- (수료기준)
 -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30시간 이상)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 부여(청소년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 연수과정 평가, 수료는 자격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4조)

□ 보수교육

- (목적) 청소년지도사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기능 및 자질향상 도모
- (보수교육 근거 및 운영절차)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 *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www.youth.go.kr/yworker/usr/index.do)의 온라인 접속
- (교육대상)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교육주기 2년)
 - * 성평등가족부 및 지자체 허가 청소년 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회원단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 (수료기준) 교육과정(19시간) 중 15시간 이상 이수(* '13년부터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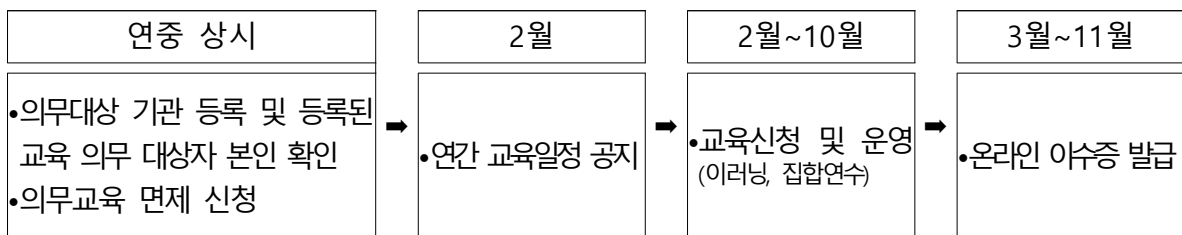
【참고자료 2】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 자격연수

- (목적) 청소년상담의 전문화와 상담자 자질 향상 및 일반상담과 차별화된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 양성
- (자격연수 대상) 제1회('03년) 부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필기, 면접, 서류 전형)에 최종 합격하고 자격연수를 받지 않은 자
- (수료기준)
 -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100시간 이상)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 자격 부여(청소년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연수과정 평가, 수료는 자격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 보수교육

- (목적) 청소년상담복지정책의 핵심 수행 인력인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 요구
- (보수교육 운영절차)



*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의 온라인 접속

- (교육대상) 「청소년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른 보수교육 의무대상 기관*에 종사하면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등

【참고자료 3】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	시설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정부안		
		1인 기본급 (월평균)	1인 기본급 (월평균)	전년대비 증가율	가이드 라인 대비율	1인 기본급 (월평균)	전년대비 증가율	가이드 라인 대비율
총계		-	-	-	83.8%	-	-	87.9%
청소년복지 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2,207	2,350	6.5%	83.2%	2,557	8.8%	90.6%
	청소년쉼터	2,207	2,350	6.5%	83.2%	2,554	8.7%	90.5%
※ 사회복지 시설	청소년회복지원 시설	2,154	2,309	7.2%	81.8%	2,512	8.8%	89.0%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운영	국립청소년치료 재활센터*	2,531	2,618	3.4%	92.8%	2,776	6.0%	98.3%
	※ 사회복지 시설	지역청소년치료 재활센터*	2,568	2,717	5.8%	96.3%	2,866	5.5%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청소년매체환경 보호센터	2,867	2,954	3.0%	104.7%	3,058	3.5%	108.3%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2,653	2,733	3.0%	96.8%	2,828	3.5%	100.2%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 상담사	2,292	2,361	3.0%	83.7%	2,443	3.5%	86.6%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 데미	2,213	2,260	2.1%	80.1%	2,340	3.5%	82.9%
청소년사회 안전망 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종사자)	2,250	2,318	3.0%	82.1%	2,406	3.8%	85.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심리사)	2,816	2,900	3.0%	102.7%	3,010	3.8%	106.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중심리클리닉)	2,411	2,483	3.0%	88.0%	2,637	6.2%	93.4%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1,996	2,096	5.0%	74.3%	2,172	3.6%	77.0%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759	780	2.7%	91.1%	808	3.6%	94.5%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2,287	2,356	3.0%	83.5%	2,438	3.5%	86.4%

* 별정직 제외

** 주 12시간 근무,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대비율은 주40시간으로 환산하여 비교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2,822천원(생활지도사 10호봉 수준, '25년 기준) 대비
자료 : 성평등가족부